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855호

나. 제출자 : 김상훈 의원 외 찬성자 20명

다. 제출일자 : 2015년 11월 5일

라. 회부일자 : 2015년 11월 6일

## 2. 제안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 중 “고급형 택시”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에 관계없이 시·도지사에게 운임을 신고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 바, 관련 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위법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3. 주요내용

- 고급형 택시요금의 요금 결정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사항에서 고급형 택시요금을 제외함(안 제3조제2항 1호)

####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병국)

#####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고급택시 요금이 자율신고제로 변경됨에 따라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사항에서 고급택시의 요금을 제외하는 것임.

##### < 신구조문 대비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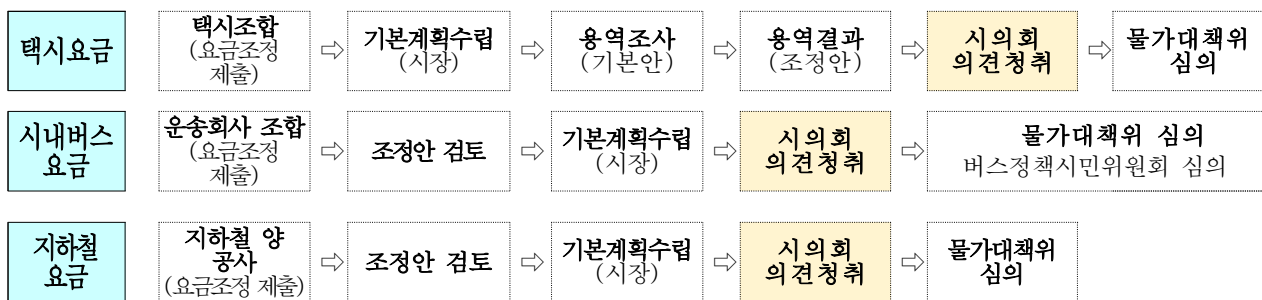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물가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② 위원회는 시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요금( 시내버스·마을버스요금, <u>택시요금</u> 및 도시철도요금)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물가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② 위원회는 시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요금( 시내버스·마을버스요금, <u>고급형 택시를 제외한 택시요금</u> 및 도시철도요금)

##### 나. 물가대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 물가대책위원회는 물가의 안정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서울특별시장의 자문에 응하고자 시의원, 물가관련 시민단체 및 소비자 대표, 물가 관련 전문가와 언론·법조인 등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음.
- 물가대책위원회는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며, 시장이 결정·관여하는 교통요금(시내버스·마을버스요금, 택시요금 및 도시철도요금), 도시가스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중교통요금 결정 절차>



#### 다. 고급택시의 도입 배경과 추진 경위

- 차량 운전기사와 승객을 모바일 앱을 통하여 중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 네트워크 회사인 우버(Uber)가 국내에 도입되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측면에서 논란이 발생한 바가 있음.
- 이에 국토교통부는 우버의 불법유상운송 수요를 합법적 영역으로 흡수하고 택시서비스를 고급화하고자 2015년 9월 15일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고급형 택시의 경우 시·도

지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운임·요금을 정하도록 하였음.

<고급택시의 특징>

- 서비스수준 : CS교육을 받은 운전자의 고급형 서비스 제공
- 운 행 차 량 : 최소 2,800cc이상의 고가 고급형 차량
- 완전월급제 : 일정수준 이상의 월급제 운영 (법인택시)
- 완전예약제 : 배회영업 없이 예약승객에게 운송서비스 제공
- 차 량 외 관 : 일반 승용차와 차이가 없는 외관 (차량번호판만 노란색)
- 요금신고 내용 : 기본요금 8,000원 (기본거리 없음)
  - 거리요금 100원/71.4m (1km당 1,400원), 시간요금 100원/20초

- 법령 개정과 함께 국토교통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고급택시를 제외하여 조례가 법령과 상충되지 않게 해당 조례에 대한 개정을 요청한 바가 있음(첨부자료 3).
  -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르면 고급택시의 자율요금 신고제의 도입 시기를 서울시의 경우 15년 9월 15일부터, 그 외 지역은 16년 1월 1일부터로 정하고 있음.
- 국토해양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공문을 근거로 고급택시사업자들은 사업계획을 인가받았고 현재 고급택시를 운영하고 있음.
  - 시행령 개정 당시 서울시 소재의 고급택시사업자들은 이미 법인의 설립과 운전자의 모집·교육 및 차량구매 등을 완료하여 사업개시의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였으며 조례 개정을 기다리게 되면 추가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고급택시 관련 추진경위>

- 고급택시 운영법인 하이엔 설립('15.4월)
  - 구성원 : 법인택시회사, 한국스마트카드, 다음카카오
- 고급택시 차량구매 완료('15.10월) : 92대
- 고급택시 운전자 모집 및 교육('15년 8월) : 203명
- 고급택시 인가수리(사업계획변경) : '15년 10월 28일
- 고급택시 요금인가 수리 : '15년 10월 29일
- 고급택시 운송개시 : '15년 11월 3일
  - 법인택시회사 16개사에서 총 97대를 운영하고 있음

## 라. 종합의견

- 고급택시는 기본요금 등을 고려할 때 주된 이용 대상자가 일반 대중교통과는 차별될 것으로 보여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다른 요금과는 구별된다는 점에서 고급택시 요금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도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서울시의 경우 조례개정에 앞서 고급택시의 자율요금제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여 서울시의 자치입법권을 침해하였다는 논란이 있음.
- 비록, 서울시의 경우 고급택시사업의 인가가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었다는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사실상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개정 내용을 서울시가 조례에 반영할 물리적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개정된 시행령을 바로 적용하여 자치입법권이 배제되는 유감스러운 결과를 초래된 바, 향후 서울시에서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업무 협의를 통하여 동일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여야 함.

<참고자료 1>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현황(최근 5년간)>

연번	개최일자	안건수	안 건 명	회 의 결 과
1	'11-01-18	1	2011년 서울시 물가종합대책 협의	- 2011년 물가대책에 대한 의견 개진
2	'12-01-30	1	지하철과 버스요금 조정안 - 기본요금150원인상(13.9%) - 어린이청소년 교통카드요금동결	- 원안가결(찬성 13, 반대 6, 기권 1)
3	'13-09-24	1	택시요금 조정(10.9% 인상) - 중형기본요금 600원 인상 - 중형거리요금 100원/142m - 대형/모범 기본요금 500원	- 원안가결(찬성12, 반대5)
4	'13-11-25	1	도시가스요금 조정 심의 - 0.0556원/MJ(1.93원/m <sup>3</sup> )인상	- 원안 부결(반대 9, 찬성 7)
5	'14-06-17	1	도시가스요금 조정 심의 - 0.0984원/MJ(3.8원/m <sup>3</sup> )인상	- 원안 가결(찬성 11, 반대 3)
6	'15-06-12	1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조정 심의 - 지하철 200원 인상 - 간·지선버스 150원 인상 등	- 심의유예(보류 10, 찬성 9, 반대 1)
7	'15-06-18	1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조정 재심의 - 지하철 200원 인상 - 간·지선버스 150원 인상 등	- 원안가결(찬성 12, 반대 8)
8	'15-10-23	1	서울시 도시가스요금 조정 심의 - 0.0269원/MJ(1.13원/m <sup>3</sup> ) 인상	- 보류(위원 합의)
9	'15-12-14	1	서울시 도시가스요금 조정 재심의 - 0.0269원/MJ(1.13원/m <sup>3</sup> ) 인상	- 원안가결(찬성 11, 반대 1)



<참고자료 2>

-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임이나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운임·요금의 기준과 요율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인 어린이 1명은 운임이나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의 좌석을 따로 배정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운임이나 요금을 받고 운송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7조(운임·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제외한다)를 받은 자
2.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중 고급형으로 구분된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3.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중 고급형으로 구분된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4. 제4조제2항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참고자료 3>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고급택시 요금 관련) 알림

1. 귀 사·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부는 고급형 택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고급형 택시에 대해서는 '자율요금 신고제'를 적용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7조를 개정하였습니다.

\* 관보 제18597호('15.9.15.(화)) 참고

3.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15.9.15.부터, 그 외의 지역은 '16.1.1.부터 고급형 택시에 대해서는 '자율요금 신고제'가 적용'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니, 각 사·도의 조례에서 택시요금에 대하여 물가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7조와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고급형 택시를 물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해당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의 개정여부와 관계없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일부터 '자율요금 신고제' 적용

- 붙임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최종 수정본) 1부.
- 2. 150915 관보 제18597호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관인생략

수신자 서울특별시장(택시물류과장), 부산광역시장(대중교통과장), 대구광역시장(택시물류과장), 인천광역시장(택시화물과장), 광주광역시장(대중교통과장), 대전광역시장(운송주차과장), 울산광역시장(버스택시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교통과장), 경기도지사(택시정책과장), 강원도지사(교통과장), 충청북도지사(교통물류과장), 충청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 전라북도지사(물류교통과장), 전라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 경상북도지사(민생경제교통과장), 경상남도지사(교통정책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통정책과장)

행정사무관 고성우 팀장 김유민 과장

전결 09/17  
박지홍